

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-사회관계활성화(국비)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								
사업위치											
총사업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국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사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보조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구비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487,500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25,000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62,500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6.7 %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487,500천원	325,000천원	162,500천원	66.7 %	
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						
487,500천원	325,000천원	162,500천원	66.7 %								
사업내용	○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특성별*로 분류한 후 그룹별 심리치료·건강·여가 프로그램,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여 사회관계 복원 지원										
사업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
사업시행주체											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지방보조심사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경상	투자				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
지원형태	법령근거	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	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(보호의 방법)	
운영비보조		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어르신복지과	김복재 2133-7400	육언조 2133-7418	채소영 2133-7413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	(x-)
계	(x-)	(x325,000) 487,500	(x325,000) 487,500	(x-)	(x-)
자치단체경상보 조금	(x-)	(x325,000) 487,500	(x325,000) 487,500	(x-)	(x-)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487,500,000원 = 487,5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어주고, 우울증 치료 및 집단상담프로그램, 자조모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예방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(보호의 방법)
 -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
□ 사업내용

- 서비스내용: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특성별*로 분류한 후 그룹별 심리치료·건강·여가 프로그램,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여 사회관계 복원 지원
- 서비스지원: 13개 기관(12개 구), 1개기관당 50백만원

□ 추진경위

- 14~'15년(1,2차) 시범사업 시작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
-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특성별로 분류한 후 그룹별 심리치료·건강·여가 프로그램,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여 사회관계 복원 지원

사업추진절차

- 집행절차 : 기본계획 수립(시) → 보조금 교부(시→자치구) → 보조금 집행(자치구→수행기관) → 정산·보고 (수행기관→자치구→시)

2017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487,500	
사업계획 수립 및 월별 보조금 교부	2017.01~2017.12	487,500	

4 사업 효과

5 최근 3년 결산 현황